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2. 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 11.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 11.21.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2014. 1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 기 락 환경과장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소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게 수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안 제1조)

- 1)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사업 등” 을 규정(안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
- 2)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허가대상	규정사항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의 부지,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2배 이내로 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사업소의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부대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사업소의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고압가스 판매소	사업소의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 부대설비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가스사업 등”이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정의 하였음.
- 안 제3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4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정함.

검토의견으로는

1999. 3. 20부터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사업 등에 대한 세부 허가 기준을 허가권자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14. 7. 22 “법률 제12297호”)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구청장 허가 사항에 대한 세부허가 기준을 상위 법령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한 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